1882년의『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연구

Kwon Hyuk-soo

1. 들어가는 말
2. 한중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노력: 『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결배경
3. 일방적으로 주도되어온 불평등한 교섭양상: 『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결경위
4. 전통에서 근대로의 과도기적 성격: 『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의 내용 및 영향
5. 나가는 말

목 차

1. 들어가는 말

1882년 10월 중국 天津에서 체결된『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이하『中朝章程』으로 약칭함)은 1894년의 청일전쟁 직전까지 한중 두 나라 관계의 기본 프레임을 마련한 가장 중요한 국제법 문헌으로서 19세기 말 한중관계사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中朝章程』에 관한 전문연구로 한국학계의 金鍾圓,중국학계의 張存武, 高偉濃, 李秀蓮, 宋慧娟, 費馳 및 일본학계의 秋月望 등의 연구가 있는데 대체로『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결경위 또는 그 영향 등에 관한 단편적인 접근으로서 그 배경과 내용 및 영향 그리고 장정의 텍스트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종합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고에서는 한중일 등 관련국가의 기초사료 및 연구문헌에 대한 조사 및 교차적 분석을 바탕으로『中朝章程』의 체결배경, 기본내용 및 관련사실에 대한

역사학적 실증작업과 국제법적 검토 등 학제적인 종합분석을 시도함으로서 국내외 학계 관련연구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저 한다.

2. 한중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노력:

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결배경

19세기 중반부터 서세동점의 세계사적 전환과 더불어 전개된 구미 자본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에 따라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결국 구미열강의 견고한 군함과 정예한 대포(“堅船利砲”) 에 의해 속속 나라의 대문을 열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1840-1842년의 아편전쟁에서 대영제국에 패한 중국 청정부가 老大한 동양제국의 대문을 열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1858년 미국의 “黑船”에 의해 幕府 일본이 부득불 개항을 선택하였으며, 소위 “은둔의 나라(the hermit nation)”로 불리던 조선왕조마저 신흥일본의 무력위협으로 체결된 1876년의『朝日修好條規』에 의해 드디어 나라의 문호를 열게 되었는데 파란만장한 근대한중관계사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실제로 한중관계사의 근대적 전환과정은 두 나라가 선후로 근대적 역사시기에 진입한 사실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또한 두 나라 모두 나름대로 근대화의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던 사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 청정부의 경우 1860년대부터 이미 “自强”을 목표로 한 초기 근대화 과정을 시작하였고 조선왕조의 경우 역시 대원군 집권시절의 부국강병정책에 이어 1880년대 고종정부의 개화정책으로 근대화 노력을 다그쳐가기 시작하였다. 바로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청정부는 1879년부터 이홍장-이유원의 서신연락채널을 통해 조선왕조 고종정부로 서양열강과의 수교통상을 통해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위협을 견제하도록 적극 권고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듬해인 1890년 9월 6일 일본 동경에서 곧바로 귀국 길에 오르게 될 조선왕조 修信使 金宏集에게 手交한『朝鮮策略』에서 당시 청정부 주일공사관 참사관 黃遵憲은 소위 “親中國”策의 일환으로서 “鳳凰廳貿易을 보다 확대하고 중국상인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부산, 원산, 인천 등 항구로 와서 통상하도록 奏請하여 일본상인들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소위 “봉황청무역”이란 바로 당시 한중 두 나라 사이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조공무역을 가리키는데 국경에서의 互市貿易과 조공사절에 의한 使行貿易을 포함한 조공무역은 조공관계의 정치적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근대적인 불평등한 경제무역관계로서 특히 조선왕조 측에

일방적인 부담을 많이 가져다 주였다. 따라서 조선왕조 고종정부 측에서 당연히 전통적 조공무역관계의 개변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실제로 고종정부는 1881년 2월말 中樞府 知事 李容肅을 국왕의 밀사자격으로 청나라 天津에 파견하여 直隸總督 겸 北洋通商大臣 李鴻章에게 조선정부의 공식의사를 담은 비밀문서인 8개조항의『請示節略』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항이 바로 앞서『조선책략』에서 주장한 것처럼 청나라 상인의 조선 개항장 통상을 허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사실상 한중 두 나라의 海禁 해제 및 통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홍장은 조선국왕이 공식 咨文으로 요청해 올 경우 청나라 황제에게 상주해주겠다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었고, 당시 청정부내에서도 러시아와 일본의 조선침략을 견제하기 위해 한중 두 나라 상인들의 상대국 개항장 통상을 허용하자는 건의가 제시되었다.

바로 그 무렵 光緖황제의 재가에 의해 이홍장이 청정부 對朝鮮정책의 결정 및 집행구조에서 주도적 위치와 역할을 공식 보장받게 되었으며 따라서 청정부와 이홍장은 조선에 대한 서양열강과 수교통상 권고 및 武備自强策 지원을 통해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위협을 견제하는 한편 전통적 조공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이른바 견제정책을 공식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1882년 봄 이홍장은 이미 청정부 招商局 요원을 조선으로 파견하여 한중 두 나라 통상에 관한 사전조사를 일방적으로 진행시켰고 곧이어 천진에 도착한 조선정부 統理機務衙門 主事 魚允中 일행은 北洋通商大臣衙門으로 통상장정의 체결, 조공절차의 개혁, 會寧 및 慶源 開市의 革罷와 청나라 官商에 대한 供饋 폐지, 조선정부 대표의 북경상주 등 요구에 관한 고종명의의 자문을 제출하였고 또한 5월 19일 이홍장의 막료출신인 天津海關道 周馥과 회담을 가졌다. 말하자면 전통적 조공무역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에 있어서 한중 두 나라 초기 근대화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따른 양측의 노력이 모두 있어왔지만 조선왕조 고종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청정부에 앞서 위와 같은 요구를 공식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母喪으로 천진을 곧 떠나게 될 이홍장을 대신하여 金允植, 어윤중 일행을 만난 天津海關道 周馥은 조공무역의 개변 및 통상장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통적 조공관계를 계속 고집하려는 모순된 입장을 표시하였고 청나라 광서황제 역시 같은 해 6월 14일자 上諭로 조선과 통상문제는 처리할 수 있지만 조공의 철폐 및 조선정부대표의 북경상주는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었다. 결과적으로 한중 두 나라 사이에 근대적 통상장정과 관련된 일종의 예비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천진회담은 전적으로 청정부와 이홍장의

사전의도에 따라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정부 측의 주요관심사는 전통적 조공관계의 강화를 비롯한 정치외교적 문제였고 반면에 조선정부 측 대표들은 겨우 부분적인 수정요구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23일 서울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임오군란으로 말미암아 한중 두 나라의 통상장정교섭은 일단 중단되었다가 임오군란사태가 수습된 후인 같은 해 9월에야 다시 재개되었다.

3. 일방적으로 주도되어 온 불평등한 교섭양상:

『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결경위

1882년 7월의 임오군란은 한국 초기 근대화과정에서 전환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당시 바야흐로 근대적 전환과정을 시작하는 한중관계사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임오군란 사태가 수습된 뒤 조선정부는 곧바로 謝恩겸陳奏使 趙寧夏, 金宏集 일행을 청나라로 파견하였는데 고종의 특명을 받은 趙寧夏 일행은 특히 천진을 방문하여 임오군란 이후 내정외교 방침과 관련된『善後事宜六條』를 제시하면서 이홍장의 자문과 협조를 공식 요청하였다. 마침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적극적 간섭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한 청정부는 같은 해 9월 17일 이홍장과 조녕하 일행의 제3차 회담을 통해 통상장정의 체결에 긍정적인 확답을 주었다. 당시 이홍장은 이미 馬建忠 등에게 통상장정의 초안을 미리 작성하도록 지시해 두었는데 프랑스 유학을 통해 근대 중국

최초로 국제정치 및 국제법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馬建忠은 당시 외교분야에서 이홍장의 핵심 막료로 활약하면서 특히 1882년 5월『朝美修好條約』의 체결 및 같은 해 7월 임오군란 탄압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 실제로 9월 17일 회담 당시 이홍장은 조녕하, 김

굉집에게 자신이 이미 마건충 등에게 통상장정의 초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두었으니 곧바로 광서황제의 裁可를 거쳐 總理各國事務衙門을 통해 그 내용을 조선 측으로 통보하여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조녕하 일행도 아무런 異議를 제기하지 않

았다.

이처럼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정부와 이홍장에게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어온 통상장정 관련 교섭양상은 그후 단계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었는데 바로 전통적 조공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평등한 통상무역관계의 수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실제로 같은 해 9월 23일에 問議官으로 임명된 어윤중이 9월 28일에 천진에 도착한 후 재개된 통장장정 관련교섭은 사실상 조선왕조 고종정부 공식 대표자격의 어윤중과 이홍장의 막료출신인 天津海關道 周馥 및 候選道 馬建忠 사이에서 진행되었는데, 어윤중은

이홍장 측에서 이미 마련해둔 통상장정 초안에 약간의 수정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이홍장은 겨우 어윤중을 한번 만나주는 것으로 그쳤다.

10월 3일 天津海關道衙門에서 진행된 회담은 사실상 한중 두 나라 사이에 통상장정체결과 관련된 유일한 본격적인 실무회담으로서 청정부측의 외교문서에 의하면 당시 어윤중은 이홍장 측에서 작성한 통상장정 초안에 관한 수정요구를 문서로 제출하였고 이에 주복과 마건충도 이홍장의 지시에 따라 답변문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구체적으로 논의된 양측의 의견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 표1과 같다.

표1. 10월 3일 천진 회담에서 한중 두 나라 대표 사이의 논의내용

어윤중의 수정요구	주복. 마건충의 답변내용
제2조항 駐韓 청나라 商務委員에게만 주어진 영사재판권을 駐中 조선 상무위원에게도 부여해주도록 요청	청나라 會典의 조공관련 규정 및 국제공법의 관례에 따라 駐中 조선 商務委員에게 영사재판권 부여할 수 없음.
제3조항 “往來捕魚” 및 漁稅관련 규정 일본측의 간섭 막기 위해 취소 요청	海禁을 해제한 이상 두 나라 漁民들의 “往來捕魚”허락 조항을 외국간섭의 이유로 취소할 필요 없음.
제4조항 중국商民 漢城開棧 및“內地採辦”관련 규정 일본측 간섭 이유로 수정요청	외국간섭의 이유로 漢城開棧 및 “內地採辦”관련 규정 취소할 필요 없음.
초안 제6조항 조선산 紅蔘에 대한 30%관세율 인하 요청	조선 측에 대한 특별배려차원에서 紅蔘에 대한 관세율 15%로 인하.

당시 어윤중은 이홍장 측에서 마련한 통상장정의 기본내용을 대체로 수용하는 한편 한중 두 나라가 이미 구미열강 및 일본과 체결한 근대적 조약의 내용과 서로 어긋난 부분을 지적하면서 특히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간섭가능성을 이유로 위와 같은 수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주복과 마건충은 이홍장의 지시로 위와 같은 답변문서를 제출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이번에 정해진 무역장장은 실로 平行各與國과 체결한 조약내용과 다른 것이다. 굳이 다른 나라의 援例要求가 걱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첨가할 수 있는데, 즉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의 屬邦으로서 이번에 정한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비롯되었기에 여러 與國의 一體均霑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또한 장정의 첫 머리 부분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 만약 귀 측에서 장정 속에 다른 나라와 약간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여 기어코 같도록 하자고 요청한다면 결국 귀국이 은연중 중국과 대등하게 나서려는 것으로 오로지 일본사람만 두려워 할뿐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어윤중은 사실상 근대적 국제법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평등한 무역관계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홍삼 수입관세율의 50%인하라는

성과를 이룩하였는데 그러한 노력은 사실상 전통적 조공관계의 근대적 전환을 끈질기게 요구해온 고종정부의 일관된 대중국정책과 기본적으로 일맥상통하였다. 반면에 주복과 마건충은 조선 측의 위와 같은 노력을 조공관계 이탈움직임으로 경계하면서 속방관련 구절을 통상장정에 새삼스럽게 명시하기로 하였는데 바로 임오군란 직후 바야흐로 전개되고 있는 청정부의 적극간섭정책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한중 두 나라 조공관계의 객관적 현실배경 및 통상장정 관련교섭의 일방적인 전개양상 특히 어윤중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를 무시한 채 통상장정의 불평등한 결과를 단순히 국제정세나 외교에 밝지

못한 어윤중의 “외교적 실책”으로 탓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불공정한 결론으로 생각된다.

특히 훗날 총리아문으로 보낸 이홍장의 서신에 의하면 자신의 지시로 작성된 무역장정 초안을 앞서 천진에 도착한 謝恩겸陳奏使 趙寧夏 일행에게도 전달해주었지만 조녕하 일행은 별도의 사명이 있어 미처 아무런 수정요구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로지 조선국왕이 이번 통상장접 교섭을 위해 특별히 파견해 온 어윤중 만이 위와 같은 수정요구를 제시함으로서 주복 및 마건충과의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통상장정교섭과 관련하여 조선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는 사실상 어윤중 외에도 그보다 관직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높은 謝恩兼陳奏使 조녕하, 김굉집 일행도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홍장 역시 천진에 먼저 도착한 조녕하 일행과의 9월 17일자 회담에서 이미 통상장정 체결의향을 밝혀두었고 곧바로 주복과 마건충에게 통상장정의 초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실상 통상장정 관련교섭을 이미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대중국외교에서 여러 사람을 통한 다양한 채널을 가동시키는 양상은 그 무렵 대일본외교에서 수신사 등 공식 라인 외에 開化僧 李東仁으로부터 金玉均 등 開化派 인사를 포함한 비공식 라인도 함께 가동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1880년대 초반 고종정부의 심지어 난맥상까지 보여주는 적극적 외교자세와 노력의 단적인 보기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훗날 통상장정의 마지막 부분에 통상장정 관련 교섭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조녕하, 김굉집이 어윤중과 함께 조선정부 측의 서명자로 명시된